

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3 - 19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02. 12. 6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-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2,342,701천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던 중
- 붙임 조서 내용과 같이 예비비 773,581천원을 지출하였기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 요구함.

예비비 지출

(단위 : 원)

구 분			지출결정액 ㉔	지출원인 행위액 ㉔	지출액 ㉔	이월액 ㉔-㉔-㉔	불용액 ㉔-㉔-㉔	처 리 일 자		예 비 비 지 출 사 유
사 업 명		지출결정 일						지 출 일 자		
과	세 항								목	
합 계 (13 건)			805,783,000	773,581,000	773,581,000	0	32,201,940			
재해대책	자체사업	일 반 운 영 비	5,000,000	4,455,000	4,455,000	0	545,000	'01. 1.22.	'01. 4. 24.	2001. 1. 7~1. 9일 사이의 폭설 및 한파로 도로결빙에 따른 교통장애와 빙판사고의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집중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 하고자 제설 작업에 따른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소요예산을 지원
		일 반 보 상 금 (민간살비 보 상 금)	8,700,000	7,455,000	7,455,000	0	1,205,000	'01. 1.22.	'01. 2.18.	
		일 반 운 영 비	155,323,000	155,323,000	155,323,000	0	0	'01. 2.24	'01. 4. 30.	01년 2. 15일의 폭설로 인해 도로결빙에 따른 교통장애와 빙판사고의 우려가 가중 됨에 따라 집중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제설 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료의 소요예산 지원

(단위 : 원)

구	과	세		분		지	지출원인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처		예
		항	세	항	사	출	행	⊕	⊖	⊖	리	리	비
농업기술보	농업기술보	성	항	목	명	결정액	위액	⊕	⊖	⊖	정	자	지출사유
				민간자본이전(민간자본보조)	가뭇지역 긴급 농업용수개발사업	35,000,000	35,000,000	0	0	0	'01. 5. 21.	'01.12.30.	계속되는 가뭇으로 농경지의 극심한 한해가 예견되어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하여 지원
				일	가뭇지역 긴급 농업용수개발사업	17,230,000	17,230,000	0	0	0	'01. 6. 7.	'01.12.30.	가뭇지역 긴급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(2차)의 시비부담, 농업 용수 확보 지역에 대한 추가 관정개발 및 장비지원
				민간자본이전(민간자본보조)		155,357,000	138,735,000	0	0	17,622,000	'01. 6. 7.	'01.12.30.	
				자산취득비(자산및물품취득비)		1,530,000	0	0	0	1,530,000	'01. 6. 7.	-	
				민간자본이전(민간자본보조)	가뭇지역에 따른 예비투자리 추가설치	39,600,000	39,600,000	0	0	0	'01. 6. 7.	'01. 7. 24.	가뭇지역에 따른 기존 표판의 노후 및 불시 출수묘의 발생 등 대체묘의 수요 증폭과 이양담 용수부족에 따른 재이양이 불가피 하여점에 따라 예비투자리 추가 설치를 지원 하여 한발 피해대책에 단전을 기함

(단위 : 원)

구 분			사 업 명	지 출 결정액 ㉔	지출원인 행위액 ㉕	지출액 ㉖	이월액 ㉗ ㉘-㉙-㉚	불용액 ㉛ ㉜-㉝-㉞	처 리 일 자		예 비 비 지 출 사 유			
과	목	세							세세항	일		반	지출결정 일 자	지 출 일 자
농업기반 조성	지체사업	일	반	호스구입 및 어룡 저수지 준설장비 입차	43,200,000	43,200,000	43,200,000	0	0	'01. 6.13.	'01. 8. 2.	가음지역 긴급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(3차)의 시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원하여 가음지역의 적기 영농추진과 한발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함		
				시설비및 부 대 비 (시설비)	2,500,000	2,500,000	2,500,000	0	0	'01. 6.13.	'01.10.18.			
				민간자본 이 전 (민간자본 보 조)	130,300,000	124,376,000	124,376,000	0	5,924,000	'01. 6.13.	'01.12.30.			

(단위 : 원)

구 분			지 출 결정액 ㉔	지출인인 행 위 액 ㉕	지 출 액 ㉖	이월액 ㉗-㉙-㉚	불용액 ㉛-㉜-㉝	처 리 일 자		예 비 비 지 출 사 유
과	세	항	세	항	세	항	항	지출결정 일 자	지 출 일 자	
청소관리	지체사업	일 반 운 영 비	2	33,000,000	32,135,000	0	855,000	'01.9.7.	'01.10.16.	2001. 8. 22일부터 시작된 민노총 소속 환경 미화원의 불법 파업과 관련, 생활 쓰레기 수거를 위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의 급식비를 예비비로 지원하여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고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		일 반 보 상 금 (민간실비 보 상 금)						'01.9.7.	'01.12.28.	
인사행정	인 건 비	인 건 비 (수 당)	35,059,000	35,059,000	35,059,000	0	0	'01.11.10.	'01.11.16.	2001년도 명예퇴직수당을 당초예산에 확보 하였으나 제 1,2,3차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후 제 4차 명예퇴직을 시행함에 있어 수당 지급액이 부족됨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예산 지원

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 요구함.

□ 주요골자

-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2,342,701천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던 중
- 붙임 조서와 같이 예비비 773,581천원을 지출하였기에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 요구함.

■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현황

(단위: 원)

구 분	건수	지출결정액 ①	지출원인 행 위 액 ②	지출액 ③	이월액④ (①-③-⑤)	불용액⑤ (①-③-④)
계	13	805,783,000	773,581,060	773,581,060	-	32,201,940
일반회계	13	805,783,000	773,581,060	773,581,060	-	32,201,940

□ 검토의견

-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등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.
- 금번에 제출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폭설 및 한파에 따른 제설 작업, 구제역 특별방역사업, 명예퇴직수당, 가뭄과 관련한 지원사업, 환경미화원 불법 파업과 관련한 생활쓰레기수거 등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와 관련하여 지출된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지 방 자 치 법

제 120조 (예비비)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지 방 재 정 법

제34조 (예비비)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